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제6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 또는 “당사”)의 제6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이하 “본건 사채”,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층무아트센터

⇒ 최근 서울 및 경기권 중심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집회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 안내 및 공고 예정

3. 참석대상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제6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의 사채권자

4. 회의 목적사항

| 의안 | 내용 |
|--|----------------------|
| 제1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의 건 | “6. 제안의 이유와 참고사항” 참조 |

5. 소집자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본건 사채의 발행회사의 지위에서)

6. 제안의 이유와 참고사항

가. 제안이유

발행회사는 2021년 5월 1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발행회사와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의 분할합병에 대한 본건 사채권자 이의 제기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고 분할합병 절차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본건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나. 참고사항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사 재산의 일부인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을 두산중공업에 흡수합병하고, 당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위와 같은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합병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채무 중 분할로 인해 두산중공업으로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두산중공업으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사채권자는 사채권자 결의를 거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채권자들의 이의 제기 여부를 신속히 확정하고 분할합병 절차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회사의 2021. 3. 19.자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합병결정)(이후 정정신고 포함) 및 2021. 5. 13.자 상장채권관련기타주요사항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일 1주일 전인 2021년 6월 1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 2 항에 따라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시, 군 법원 제외)에 공탁하셔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직접 또는 대리행사

의결권은 사채권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출석행사 시 지참서류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접행사 :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 ③ 신분증

2) 대리행사 혹은 대표행사(법인 사채권자의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 ②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 ③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대표행사의 경우 필요 없음)
-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 ⑤ 본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⑥ 대리인 혹은 대표자의 신분증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5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집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채권자의 의결권은 의결권 총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9. 의결권 서면행사에 관한 사항

가. 서면행사

의결권은 상법 제495조 제3항에 따라 집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행사 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의결권 행사 서면(별첨 참조)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① 집회의 명칭과 일시, ② 사채권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③ 보유사채의 금액, ④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 ⑤ 사채권자의 기명날인 등이 모두 기재되면 정당한 의결권 행사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다. 서면행사 시한

작성하신 의결권 행사 서면은 공탁서 원본,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첨부하여 본건 사채권자집회일 전일까지 아래 명시된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채권자집회일 전일까지 의결권 행사 서면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의 서면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송부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5, 분당두산타워 N동 20층 자금팀

라. 기타 유의사항

별첨 의결권 서면행사 관련 주의사항 안내 참고.

10. 결의의 효력

본건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하면 해당 결의는 상법 제498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제6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

채의 사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본건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는 법원의 인가시까지 본건 사채의 양도, 입질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을 경우 당사는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한편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 바로 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1. 기타 본건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 담당자 연락처 : 031-5179-4240

2021년 5월 18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동 연

[별첨]

사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 서면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제6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이하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집회(2021년 6월 9일 오전 9시 00분 개최 예정)의 의안에 대하여 상법 제495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 음

1. 일시: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3. 회의 목적사항 및 의결권 행사 내용(의안설명서 참조)

| 구분 | 부의안건 | 찬성 | 반대 |
|--------|--|----|----|
| 제1호 의안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의 건 | | |

* 해당란에 ○ 또는 √ 표시

2021년 __월 __일

보유 사채 금액(의결권수): _____ 원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사채권자(성명 또는 법인명): _____ (인)

* 사채권자(성명 또는 법인명) 란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2.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출석자 개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의안설명서

**제1호 의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의
건**

1. 본건 사채권자집회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2021. 5.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의결권 서면행사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사채권자집회 의결권 행사 서면 용지에 사채권자명,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보유 사채 금액(의결권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채권자 확인 과정에서 기재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서면 의결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유 사채 금액은 공탁서에 기재된 사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소는 공탁서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기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 공탁서를 돌려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 행사 서면에 (i) 찬성, 반대 중 어느쪽도 표시하지 않거나, (ii) 찬성, 반대란에 모두 표기하거나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i) 문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석한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만 의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 수 계산 시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단, 문자 이외에 ○ 또는 √ 등 기타의 도형을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기한 것인지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간주합니다.

3. 개인인 경우에는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③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법인인 경우에는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② 전자등록증명서 사본, ③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⑤ 출석자 개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어 사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결권 행사 서면은 집회일 전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5, 분당두산타워 N동 20층 자금팀]로 우편송부(FAX는 인정하지 않음) 되어야 하며, 발송 후 도착하지 않았거나 집회일 전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서면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채권자 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 자금팀 (연락처: 031-5179-424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